

| 업종별위원회_ 공공기관위원회(발족예정) |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공공기관 개혁방안 마련해야

구미현 전문위원

공공기관위원회의 설치는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4.3)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공공부문 관련 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이어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¹⁾(이하 '공대위')에서 「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 공공기관노정위원회 구성(안)」을 제출(4.18)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4.23)를 거쳐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10.12)에서 금융·해운·보건업종·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발족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수차례의 준비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위원회' 설치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 발족 직전의 상황에서 위원 구성 등을 둘러싼 노·정 간 이견으로 담보상태에 놓여 있다.

제1차 준비회의(10.22)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회의체 명칭을 '공공기관위원회'로 정하는 것에는 전원 동의하였으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공대위와 정부 간 이견을 확인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정부는 균형적인 논의를 위하여 정부위원을 노동계와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경영계 위원(경총, 대한상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추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공대위는 노·정 5명 동수 구성에는 동의하며 그 대안으로 2개의 대표적인 공공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추가로 참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1)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인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되어 있음



대표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경총과 대한상의 참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준비회의(11.1)에서도 위원 구성과 논의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 1~3차(11.1, 11.5, 11.9) 준비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한 끝에 공대위 5개 산별연맹(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과 5개 정부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핵심적인 참여주체가 되는 것으로 논의되다가, 마지막에 구체적인 참여자 급의 문제, 즉 노동계 위원을 공대위 5개 산별연맹 위원장 급으로 하는 것과 그에 상응하는 5개 정부부처의 대표자 수준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문제로 현재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논의 의제 역시 노·정 간 의견 차이가 극심해서 난항을 겪었다. 공대위에서는 논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① 단체협약 원상회복·노동기본권 보장, ②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③ 노동이사제 조기 도입, ④ 2019년 예산편성·집행지침, ⑤ 경영평가 2단계 개선, ⑥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 ⑦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⑧ 노정협의 제도화 등 당초 제안한 8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했고, 이와 달리 정부에서는 공대위가 제안한 의제 중 ①, ②를 제외하고 우선 논의 의제 등을 정리하면 회의체 발족이 가

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① 단체협약 원상회복·노동기본권 보장, ②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등 두 가지 의제는 별도의 공대위-기획재정부 간 노정협의를 통하여 논의하기로 정하고, 공대위가 제안한 나머지 6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참여주체들 간의 논의 의제 및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상이한 의미부여로 조율이 원활치 못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위상과 책무가 막중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각자 맡아야 할 구체적인 역할을 찾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때이다.